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시행계획

1 평가개요

□ 평가방향

-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의 이행 담보 및 공공부문 확산을 위하여 기관별 혁신 추진실적을 평가
 - 사회적 가치, 주민참여 등에 대한 평가 강화
- 정부혁신 준비, 실행, 성과 등 단계별 추진실적을 기관별로 평가하고, 분야별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공부문 전파 및 주민 공감대 형성
 -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의 중점사업 이외에도 지방 특성을 감안하여 추진한 혁신 우수사례를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혁신 유도

□ 평가대상

- 243개 지방자치단체 (광역 17개, 기초 226개)

□ 평가시기 및 방법

- '17.12월 ~ '18.11월 실적 대상으로 '18.11 ~ 12월 평가
- 행안부 「정부혁신평가단」 구성·운영 및 과제 주관부처* 평가단 활용
 - * 인권개선 노력(인권위), 주민참여 제도 활용도(권익위), 청렴도(권익위) 등 과제 주관부처가 평가하고 결과를 반영
- 혁신평가 등급 발표, 우수 지방자치단체 대상 재정인센티브 부여 및 포상

2 평가항목

□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 점	
혁신 준비	사회적 가치를 위한 혁신 인프라	• 실행계획의 충실성 - 적정성, 실현 가능성	9	15
		• 혁신 추진 기반 - 혁신 추진 체계, 혁신 운영 지원	6	
혁신 실행 및 성과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는 정책 조정 노력 - 안전, 복지, 환경 관련 핵심 정책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개선·보완하여 성과를 낸 사례	21	30
		• 인권개선 및 장애인 고용 노력	9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	• 정책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 상향식 주민의견 수렴 및 소통을 통한 정책 추진 사례 - 주민참여 제도 활용도	13	27
		• 협업문화 조성 및 우수사례	6	
		• 공공자원 개방 확대 - 공공자원 개방·공유 실적 및 사례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운영 실태 - 정보공개	8	
	넓은 관행을 혁신하는 신뢰받는 정부	•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한 청렴도 제고	4	18
		• 일하는 방식 혁신	7	
		• ICT 활용 공공서비스 혁신 - 첨단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개선 - 공공서비스 목록 현행화	7	
	대표 사례		• 기관 대표 혁신 사례 - 국민 체감도 및 기관 자율평가 - 자율 혁신 사례	10
총 점			100	

□ 평가항목별 평정방법

- 준비, 실행 및 성과 단계별 지표 특성에 따라 정량 또는 정성평가 실시
- 추진실적 및 대표 사례에 대해 광역단위 자율평가 및 국민 체감도 측정

평가지표

1. 실행계획의 충실성 (9점)

- 기관이 수립한 실행계획의 적정성, 수립된 전략 및 실행과제의 실현 가능성 등을 정부혁신평가단이 평가 (6점)

연 번	구 분	내 용
1	적정성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의 비전·목표·전략·과제 등이 기관의 실행계획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기관 추진 실행과제가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의 방향과 부합하는지에 대해 판단
2	실현 가능성	조직, 인력, 기능, 예산, 연도별 추진계획 등 실행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 판단

<점수 부여 기준>

단 계	탁 월	우 수	보 통	미 흡
배 점	100%	75%	50%	25%

- 실행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기관이 자율평가 (3점)

* 구체적 자율평가 방식은 추후 공지

※ 평가 방식(광역 우선 적용)

1. 기관별 실행계획 평가(상기 평가기준으로 평가단이 평가, 7월)
2. 미진한 부분, 컨설팅 및 보완 권고(평가단 → 각 기관)
 - * 종합 추진계획을 충실히 담지 못한 기관에 대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 → 계획 실행 시 반영 → 실행계획 완성도 제고
 - * 정부혁신 추진협의회를 통해 분기별 이행 상황 및 실적 점검
 - * 실질적인 정부혁신 성과 창출 유도에 의의
3. 기관별 실행계획 대비 추진실적 자율평가(연말)
 - * 「계획수립 → 정책 추진 및 문제해결 → 실적 평가」 전 과정을 기관이 추진 / 기관 스스로 목표 및 지표 설정, 평가기준 수립, 평가위원 자율 구성, 점수 부여
 - * 전문가 평가(1번) 결과와 비교를 통해 기관 스스로 자율평가 결과에 대해 분석 및 보완 → 내년도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

* 기초 지자체 평가 방안 마련 중

평정방법
및 측정기준평가근거/
자료

- 2018년 4월 제출한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실행계획

2. 혁신 추진 기반 (6점)

평정방법
및 측정기준

가. 혁신 추진 체계 (3점)

- 혁신을 추진하는 전 과정에서 주민, 내부 공무원의 의견을 상향식으로 수렴하였는지에 대해 평가

연 번	구 분	내 용
1	상향식 의견수렴 실시 여부	혁신 추진 과정에서 상향식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 상향식 의견수렴 예시 : 해커톤, 공모, 타운미팅, 현장토론회, 경진대회, 제안제도 등 ※ 최소 연 2회(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인정
2	상향식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 실적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한 내용을 평가

나. 혁신 운영 지원 (3점)

- (1) 혁신 활동을 지원·장려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유형이 다양한지 평가

- * 유형의 다양성에 초점, '18년도 실제 실행한 지원만 인정
- * 지원유형 :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기관장 표창·포상, 연수, 기타
- * 1개 유형으로 인정되기 위한 최소 지원 건수(유형별 차등)
 -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 1건
 - 기관장 표창·포상 : 2건
 - 연수 : 1건
 - 기타(학습동아리 지원 등) : 1건
- * 점수 부여 기준
 - 3개 유형 지원(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포함) : 탁월
 - 3개 유형 지원(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제외) : 우수
 - 2개 유형 지원 : 보통
 - 1개 유형 지원 : 미흡

- (2) 개인·부서 성과와의 연계 여부, 기관장 관심도 등을 평가

연 번	구 분	내 용
1	성과와의 연계	부서 및 개인 평가에 반영 ※ (예시) 부서(부내)평가, 성과급, 근무성적평정
2	기관장 관심도	기관장(부기관장 포함) 주재 자체 행사실적 ※ (예시) 포럼, 공유마당, 우수사례 경진대회, 교육 등

평가근거/
자료

- 별도 서식(추후 공지)

평정방법
및 측정기준

- 안전, 복지, 환경 관련 기관의 핵심 정책 등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개선·보완하여 성과를 낸 사례 3건을 평가

※ 사례 작성 시 고려사항

- ① (정책 우선순위 조정) 기관의 핵심 정책, 중점 사업 등의 우선순위 결정 시 사회통합·복지·안전·상생협력·공동체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거나 기존의 사회적 가치를 강화
- ② (조직 운영) 조직 기능 재배분, 일·가정 양립 등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조직 운영
- ③ (제도 개선) 법령, 제도 등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개정하였는지 여부 또는 개선 노력 과정
- ④ (정책 효과) 정책 목표 제시 여부 및 개선·보완한 정책이 정책 대상자(지역 주민 등)에게 주는 긍정적 효과 정도(일자리 창출, 행정서비스 개선 등)

<점수 부여 기준>

단 계	탁 월	우 수	보 통	미 흡
배 점	100%	75%	50%	25%

* 사회적 가치 내용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13P 참고

* ‘상향식 주민의견 수렴 및 소통을 통한 정책추진 사례(지표5-가)’에 제출한 사례, ‘첨단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개선(지표 10-가)’에 제출한 사례, ‘지방 자치단체 합동평가’의 정성평가 사례와 중복 불가 / 인권개선·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지표 4) 관련 내용 제외

평가근거/
자료

- 별도 서식(추후 공지)

평가지표	4. 인권개선 및 장애인 고용 노력 (9점)
평정방법 및 측정기준	가. 인권개선 (5점) ○ 인권개선 이행노력 및 성과를 종합 평가 ※ 평가 내용 : 기관이 제출한 인권개선 내용의 우수성 ① 과거 권고 불수용의 수용으로 전환 ② 권고 외 의견표명과 관련한 실현 사례 ③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인권보호·증진 시도 ④ 인권개선과 관련한 전반적인 인식과 노력의 정도 등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책과) 소관 / 【참고자료 1】 참조 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4점) ○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근로자 고용의무인원 충족도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충족도 평가 *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 소관 / 【참고자료 2】 참조
평가근거/ 자료	○ 별도 서식(추후 공지)

5. 정책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13점)

평정방법
및 측정기준

가. 상향식 주민의견 수렴 및 소통을 통한 정책추진 사례 (5점)

- 기관이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활용을 통해 정책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선한 사례 평가

연 번	구 분	내 용
1	의견 수렴 및 소통 과정	정책 개발 및 서비스 개선 시,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소통을 추진하였는지 과정에 대해 평가
2	참신성, 창의성	기존 방식과의 차별화 정도
3	추진 성과	개발한 정책, 개선한 서비스가 주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평가
4	주민 체감도	실제로 정책, 서비스를 접한 주민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

<점수 부여 기준>

단 계	탁 월	우 수	보 통	미 흡
배 점	100%	75%	50%	25%

- * (예시) 주민참여예산제, 국민숙의제,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국가실행계획 참여,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국민참여소통 플랫폼 구축 등(『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25P 참고)
- *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는 정책 조정 노력(지표3)’에 제출한 사례, ‘첨단 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개선(지표10-가)’에 제출한 사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정성평가 사례와 중복 불가

나. 주민참여 제도 활용도 (8점)

- 제도화된 주민참여 수단을 기관이 얼마나 잘 활용하였는지에 대해 평가

연 번	구 분	내 용
1	국민디자인단	주민과 함께 정책과 행정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한 정책 추진 성과 및 기반 조성 노력
2	국민참여 정책토론회	주민이 참여하는 토론행사 개최, 자체 참여공간 구축 및 운영 실적
3	국민제안 정책 반영도	기관이 국민제안 심사 후 채택한 안건의 정책 반영 또는 실시 정도
4	국민생각함 활용도	국민생각함의 ‘기관안건’ 등재 건수 및 호응도

- * 행정안전부(국민참여정책과)·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과) 소관 / 【참고자료 3】 참조

평가근거/
자료

- 별도 서식(추후 공지)

평정방법
및 측정기준

(1) 기관 간·부서 간 협업 추진 노력, 협업 인식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 공모전, 협업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등 협업문화 조성 추진 실적을 평가

(2) 기관 간·부서 간 협업 또는 민관협업을 주관하거나 조력한 대표사례를 평가

연 번	구 분	내 용
1	혁신성	기존과는 다른 독창적·혁신적인 방식으로 협업을 추진했는지 여부
2	노력도	준비 노력 및 자원 투입
3	효과성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업무효율성 제고, 비용 절감, 협업문화 조성에 기여한 효과
4	확산 가능성	타 부서 및 타 기관 등으로 확산 가능 여부

<점수 부여 기준>

단 계	탁 월	우 수	보 통	미 흡
배 점	100%	75%	50%	25%

* 행정안전부(협업정책과) 소관

* 평정방법 및 측정기준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 운영실적 및 우수사례’가 포함될 수 있음

- 법 147~151조(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분쟁 조정)
- 법 152~158조(행정협의회)
- 법 159~164조(지방자치단체조합)

평가근거/
자료

○ 별도 서식(추후 공지)

평정방법
및 측정기준

가. 공공자원 개방·공유 실적 (1점, 감점)

- 기관이 보유한 업무용 시설·물품 중 주민 수요가 높은 자원을 유휴 시간에 주민에게 개방·공유한 사례를 평가
 - * 규모,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원 발굴 등 공유 서비스 제공 우수사례 평가(1점)
 - * 개방 대상 공공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감점(-1점) / 정부24의 등록정보를 통해 판단(상시 등록 가능)
 - * 행정안전부(공공서비스혁신과) 소관 / 【참고자료 4】 참조

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운영 실태 (5점)

- 인프라, 개방, 활용·지원 및 품질관리 등 공공데이터 제공 및 운영 실태 전반을 평가

연 번	구 분	내 용
1	인프라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등 담당인력 지정, 교육훈련, 예산 계획수립 및 확보·집행, 보유 데이터 목록 관리, 개방데이터 목록 공표 및 데이터 등록 창구 일원화
2	개방	제공목록별 실제 데이터 개방 유무, 신규 개방데이터 개방 실적·노력,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등록률, 오픈 포맷 비중, 개방데이터 제공주기 준수율
3	활용	개방데이터 활용도 제고 실적·노력,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실적·노력, 공공데이터 수요자 의견 정책 반영, 수요자 의견(오류신고·제공) 적기처리율
4	기타	공공데이터 활용 행정서비스 개선 등 우수사례,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대상기관 정비 수행 여부, 공공데이터 분쟁조정 이행 여부

- * 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정책과) 소관 / 【참고자료 5】 참조

다. 정보공개 (2점)

- 사전정보공표 등록건수 및 충실성을 평가
 - * 정보공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중 일부를 반영
 - * 행정안전부(정보공개정책과) 소관 / 【참고자료 6】 참조

평가근거/
자료

- 별도 서식(추후 공지)

평가지표

8.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한 청렴도 제고 (4점)

평정방법
및 측정기준

○ 기관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반영

연 번	구 분	내 용
1	외부청렴도	부패위험지수, 부패지수
2	내부청렴도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
3	정책고객평가	부패인식, 부패통제, 부패경험
4	부패사건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 및 주의·훈계 등 처분에 대한 감점

* 측정항목 변경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청렴조사평가과) 소관 / 【참고자료 7】 참조

평가근거/
자료

○ 별도 서식(추후 공지)

평정방법
및 측정기준

-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일하는 방식 혁신계획 수립·추진 노력 및 2018년 범정부 일하는 방식 중점 실천과제 추진 노력 등이 포함된 일하는 방식 혁신 자체 추진실적을 평가

< 참조 : 범정부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지침, 중점 실천과제 >

- ▶ 언제·어디서나 스마트하게 일하는 방식 확산(모바일 전자결재, GVPN, 영상회의, G드라이브 활용 실적 등)
- ▶ 행·재정 낭비 축소(불필요한 일 버리기 발굴·실천, 낡은 관행 제거, 업무매뉴얼 공유·지식 등록 확대 등)
- ▶ 선례 답습 행정 탈피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업무효율성 향상 사례
* 누구나 알기 쉬운 행정용어 사용, 혁신적 아이디어 구현, 적극행정 등

연 번	구 분	내 용
1	혁신성	기존과는 다른 독창적·혁신적인 방식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을 추진했는지 여부
2	노력도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기관 전체적인 준비(자체 홍보, 교육 등 적극적인 변화관리 노력) 및 자원 투입 여부
3	효과성	조직의 일하는 방식 및 대주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했는지 여부
4	확산 가능성	타 부서 및 타 기관 등으로 확산 가능 여부

<점수 부여 기준>

단 계	탁 월	우 수	보 통	미 흡
배 점	100%	75%	50%	25%

* 행정안전부(협업정책과) 소관 / 별도 안내 예정

평가근거/
자료

- 별도 서식(추후 공지)

평정방법
및 측정기준

가. 첨단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개선 (5점)

- 주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서비스를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개선한 사례를 평가

연 번	구 분	내 용
1	첨단기술 활용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모바일 시스템 등 기술의 적정성, 개방성, 이용 용이성
2	참신성, 창의성	서비스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 구현
3	개선 효과	주민 생활에 미치는 효과

<점수 부여 기준>

단 계	탁 월	우 수	보 통	미 흡
배 점	100%	75%	50%	25%

- * (예시 1)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지도를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완성
- * (예시 2) 움직임·화재 센서, 가스·수도 사용량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안전·건강 관리서비스 제공 등
- *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는 정책 조정 노력(지표3)’에 제출한 사례, ‘상향식 주민의견 수렴 및 소통을 통한 정책추진 사례(지표5-가)’에 제출한 사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정성평가 사례와 중복 불가

나. 공공서비스 목록 현행화 (2점)

- 정부24에 분야별·맞춤형으로 제공되고 있는 정부 서비스의 기초자료인 9만여 종의 공공서비스 목록에 대한 현행화 실적을 평가

연 번	구 분	내 용
1	공공서비스 목록 현행화	등록 서비스 명칭, 자격 요건, 지원 내역 등 변경 사항을 월 1회(매월 말일) 정비(현행화)
2	기타(감점)	해당 기관에서 서비스 중이나 목록 등록 누락, 담당자 교육(상·하반기 각 1회) 불참 기관 등

- * 행정안전부(정부24운영팀) 소관 / 【참고자료 8】 참조

평가근거/
자료

- 별도 서식(추후 공지)

평정방법
및 측정기준

가. 국민 체감도 및 기관 자율평가 (7점, 정성)

<추진 방식>

1.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전략·과제 및 기관의 혁신 실행 계획에 포함된 과제 등을 고려하여 혁신 성과를 창출한 다양한 사례를 기관 차원에서 공모
2. 기관 자체 우수사례 경진대회, 평가단 구성, 내부 구성원 투표 등을 통해 기관을 대표하는 혁신 사례 1건을 선정
3. 대상 사례에 대해 국민평가 및 기관 자율평가 실시

- 기관이 제시한 대표 사례가 국민생활에 실제 도움이 되었는지, 국민이 실제 성과를 느낄 수 있었는지 등을 국민평가단이 평가
- 과제를 발굴하여 실행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기관 스스로 추진하고 성과를 자율적으로 평가

* 구체적 자율평가 방식은 추후 공지

나. 자율 혁신 사례 (3점)

-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과제 이외에 기관 실정에 맞는 자율형·맞춤형 혁신 사례(대국민 프로세스 개선, 예산 절감 등)를 평가

<점수 부여 기준>

단 계	탁 월	우 수	보 통	미 흡
배 점	100%	75%	50%	25%

*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는 정책 조정 노력(지표3)’에 제출한 사례, ‘상향식 주민의견 수렴 및 소통을 통한 정책추진 사례(지표5-가)’에 제출한 사례, ‘첨단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개선(지표 10-가)’에 제출한 사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정성평가 사례와 중복 불가

평가근거/
자료

- 별도 서식(추후 공지)

참 고 자 료

1 인권개선(4-가)

□ 평가대상 : 243개 지방자치단체

○ 실적대상기간 : '17.11월 ~ '18.10월

□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방식	비중
인권개선 노력	○ 인권개선 내용의 우수성 - 과거 권고 불수용을 재검토하여 수용으로 전환한 경우 - 권고 외에 의견표명* 이행 사례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의견표명은 권고와 달리 피권고기관의 이행의무를 명시하지 않음) - 내부 인권교육 의무화 및 인권에 대한 교육·홍보 실적 - 정책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도입 여부 - 기관업무와 관련,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법령·정책·제도·관행 등 개선 실적 - 지역 인권개선을 위한 조례 제·개정 현황 - 이에 준하는 사업 추진 사례 및 인권개선과 관련한 기관의 인식과 전반적인 노력의 정도	정성	100%

□ 평가 방식

○ 전반적인 인권보호나 증진의 노력을 유형화하여 정성평가

□ 지표 담당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박병수 사무관	02-2125-9821
	하창원 주무관	02-2125-9845

2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4-나)

□ 평가대상 : 243개 지방자치단체

□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방식	비중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	정량	83.33%
	○ 지방자치단체 근로자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정량	8.33%
	○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정량	8.33%
총 계			100%

□ 평가 방식

-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고용법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 2, 제79조에 따라 연 2회 E-신고 시스템에 전산 제출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현황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6월, 12월 기준))을 바탕으로 정량평가
- 측정 산식 : 기관 점수 = 'P(A) + P(B) + P(C)' 값을 환산(최대 100)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A) = {(6월 장애인수 / 6월 고용의무인원) + (12월 장애인수 / 12월 고용의무인원)} ÷ 2

A	P(A)	A	P(A)
$1.1 \leq A$	100	$0.8 \leq A < 0.9$	40
$1.0 \leq A < 1.1$	80	$0.7 \leq A < 0.8$	20
$0.9 \leq A < 1.0$	60	$A < 0.7$	0

※ 계산시 소숫점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구함

- 지방자치단체 근로자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B)

B	P(B)
6월, 12월 모두 이행	10
6월, 12월 중 1회만 이행	5
6월, 12월 모두 미이행	0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경우(상시근로자 50인 미만)	0

-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C) = (산하 출자·출연기관 중 6월, 12월 모두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한 기관 수) ÷ (산하 출자·출연기관 수)

C	P(C)	C	P(C)
$C = 1.0$	10	$C < 0.2$	0
$0.6 \leq C < 1.0$	6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없는 경우	0
$0.2 \leq C < 0.6$	3		

※ 계산시 소숫점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구함

○ 참고 사항

- 고용의무인원 : 해당 월의 정원(공무원의 경우) 또는 상시근로자수(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해당년도 법정 의무고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인원(공무원이 아닌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 ※ 상시근로자수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중증장애인 예외) 해당 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
 - ※ 법정 의무고용률 : 3.2%('18년) → 3.4%('19년) 의무고용상향
- 장애인수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해당 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 산입
 - ※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월 60시간 미만도 포함하되,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2명 고용한 것으로 산입
(예시) 중증(60시간이상) 3명, 중증(60시간미만) 1명, 경증 10명
= (3명×2) + 1명 + 10명 = 17명

□ 지표 담당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박보현 사무관	044-202-7498
	윤희정 주무관	044-202-7486

3 주민참여 제도 활용도(5-나)

□ 평가대상 : 243개 지방자치단체

□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방식	비중
국민 디자인단	○ 국민디자인단 우수과제 창출 실적 ○ 국민디자인단 정착기반 조성 실적	정량/ 정성	25%
국민참여 정책토론회	○ 국민참여 정책토론회 개최 실적 - 주민이 참여하는 토론행사 개최 - 자체 참여공간 구축 및 운영 실적	정량/ 정성	25%
국민제안 정책 반영도	○ 기관이 국민제안 심사 후 채택 안건에 대해 정책반영 (실시)한 정도	정량	25%
국민생각함 활용도	○ 기관안전 등재건수(50%) - 기관이 자체적으로 국민생각함에 등재·운영한 실적	정량	25%
	○ 기관안전 호응도(50%) - 기관 등재 안건에 대한 국민의 호응도(댓글, 설문 참여)	정량	
총 계			100%

□ 평가 방식

○ (국민디자인단) 우수과제 공모(11월) 후 심사 과정을 거쳐 결정된 우수과제, 우수과제 후보 등에 따라 평가 점수 부여

- 우수과제 공모 시 정착기반 조성 실적 평가 안내 예정

- 우수과제 창출실적(A점) = 우수과제 선정(A점), 우수과제 후보(A점×75%), 목표 달성 과제(A점×50%), 추진목표 미달성(A점×25%), 미제출(0점)
- 정착기반 조성실적(B점) = abc 사항 중 3개 만족(B점), abc 사항 중 2개 만족(B점×75%), abc 사항 중 1개 만족(B점×50%), abc 사항 중 0개 만족(B점×25%)
 - a. 다양한 우수사례 발굴·운영을 위한 교육, 워크숍, 컨설팅,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적극적 실시 여부
 - b. 국민디자인단 추진방식을 기관 내·외로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 여부
 - c. 국민디자인단의 원활한 활동수행을 위한 예산, 인력 등 다양한 지원체계 마련 여부

○ (국민참여 정책토론) 주민이 참여하는 토론행사 개최 실적, 자체 참여공간 구축 및 운영 실적에 대해 평가

- 주민이 참여하는 토론행사 개최(70%)
 - 총 참석인원 10명 이상, 참석자의 50% 이상이 일반 주민, 관련 민간단체로 구성(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 교수 제외)
 - 점수 기준 : 5회 이상 개최 시 70%, 3회 50%, 1회 30%, 미개최 0%
- 자체 참여공간(상설 전용공간) 구축 및 운영(30%)
 - 전용공간 : 공간 운영계획(기관장 결재 要)에 따라 현판 등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 한해 인정
 - 배점 : 전용공간 구축 20%, 공간 운영(전용공간 활용 3회 이상 운영) 10%
 - ※ 공간 운영 횟수는 '주민이 참여하는 토론행사' 개최 횟수와 중복 카운트 가능 예시) 전용공간 활용 행사 3회 개최, 타 공간 행사 2회 개최
 - 100%(공통점수 70%(5회), 전용공간 구축 20%, 공간 운영 10% 인정)

○ (국민제안 정책 반영도) 국민신문고 DB에서 실적 집계·평정

- (제안 실시건수 점수) × 80% + (제안 실시율 점수) × 20%
 - 제안 실시건수 점수 = (기관 실시건수 / 기관 유형별 평균 실시건수) × 50
 - ※ 실시건 = 점검기간 실시 + 점검기간 이전 채택하고 점검기간 중 실시한 건(일부 실시 또는 완전 실시만 해당, 실시 예정 및 실시 불가 제외)
 - 제안 실시율 점수 = {(점검기간 내 채택하고 실시한 건 + 점검기간 이전에 채택하고 점검기간 중 실시한 건) / (점검기간 내 채택 건 + 점검기간 이전에 채택하고 점검기간 중 실시한 건)} × 100
 - ※ 민원이관 및 비제안종료건 제외

○ (국민생각함 활용도) 국민생각함 DB에서 실적 집계·평정

- 기관안전 등재건수 = {①신규등록 점수(a) + ②생각완성 점수(b)} × ③소관법령수 가중치(c)
 - a. 안전 신규등록(탄생) 점수 : 생각함에 등재한 안전수(기존안의 '발전' 미포함)
 - ※ '18년 평가기간 내 실적 집계 후 구간 재산정

<'17년 실적 기준 구간표>

1~5건	6~10건	11~15건	16~20건	21~25건	26~30건	31~35건	36~40건	41~45건	46~50건	51건~
30점	32점	34점	36점	38점	40점	42점	44점	46점	48점	50점

b. 생각완성 점수

- ※ '18년 평가기간 내 실적 집계 후 구간 재산정

<'17년 실적 기준 구간표>

1~5건	6~10건	11~15건	16~20건	21~25건	26~30건	31~35건	36~40건	41~45건	46~50건	51건~
30점	32점	34점	36점	38점	40점	42점	44점	46점	48점	50점

c. 소관법령(법률, 시행령)수 가중치

<소관법령수 대비 가중치>

('18.1. 현재 기준)

20건 미만	20건이상 40건미만	40건이상 60건미만	60건이상 80건미만	80건이상 100건미만	100건이상 120건미만	120건이상 140건미만	140건이상 160건미만	160건이상 180건미만	180건이상 200건 미만	200건 이상
150%	145%	140%	135%	130%	125%	120%	115%	110%	105%	100%

- 기관안전 호응도 = {(개별기관 안전당 참여자 수) / (기관 유형별 평균 안전 참여자 수)} × 50
 - 개별기관 안전당 참여자 수 = (총 참여자 수) / (총 등록 안전수)
 - ※ 참여자 수 집계기준: 댓글, 설문 등 참여자수(평가기간 만료일 24:00기준)

□ 지표 담당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행정안전부 국민참여정책과 (국민디자인단, 국민참여 정책토론회)	김영근 사무관	02-2100-346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국민제안, 국민생각함)	김종혁 사무관	044-200-7267

4 공공자원 개방·공유 실적(7-가)

□ 평가대상 : 243개 지방자치단체

□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방식	비중
개방·공유 우수사례	○ 지방자치단체별 개방·공유 대표사례 1건 제출 - 지방자치단체 추진의지(추진체계, 공유자원 규모 등), 창의성(지역 특성에 맞는 개방사례 발굴), 효과성(주민 이용도), 확산가능성 등 평가	정량	1점
개방여부	○ 공공자원 개방 현황 등록 - 개방 대상 공공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정부24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감점	정량	감점

□ 평가 방식

- (등록대상) 회의실, 강당, 주차장, 체육시설, 연수원(숙박시설), 기타 기관별로 공유를 희망하는 자원 등
 - (우수사례) 각 지방자치단체별 개방 대표사례 1건 제출
 - 지방자치단체 추진의지, 창의성, 효과성, 확산가능성 등 평가
 - (개방여부) '정부24' 내 '자원공유(신설)' 코너에 등록된 내용으로 판단
- ※ 연중 상시 등록 가능, 12월 15일 기준으로 등록 여부 판단

□ 지표 담당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	조한아 사무관	02-2100-4065

5 공공데이터 제공 및 운영 실태(7-나)

□ 평가대상 : 243개 지방자치단체

□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방식	비중
인프라	○ 담당인력 지정 실적(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실무자 등)	평가 조사서 활용	미정
	○ 교육훈련 지원·참여 실적		
	○ 예산 계획수립 및 확보·집행		
	○ 보유데이터 목록 관리		
	○ 데이터 등록 창구 일원화 및 개방데이터 목록 공표		
개방	○ 제공목록별 실제 데이터 개방 유무		미정
	○ 신규 개방데이터 개방 실적 및 노력		
	○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등록률		
	○ 개방데이터 오픈 포맷 비중		
	○ 개방데이터 제공주기 준수율		
활용	○ 개방데이터 활용도 제고 실적		미정
	○ 개방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실적 및 노력		
	○ 공공데이터 수요자 의견 정책 반영		
	○ 수요자 의견(오류신고·제공) 적기처리율		
기타	○ 공공데이터 활용 행정서비스 개선 등 우수사례	미정	
	○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대상기관 정비 수행 여부		
	○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이행 여부		
총 계			100%

□ 평가 방식

- 공공데이터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기관이 자체평가하고, 그 실적을 제출하여(10월말) 공공데이터평가단이 평가(11월 중)

□ 지표 담당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김수진 사무관	02-2100-3451

6 정보공개(7-다)

□ 평가대상 : 243개 지방자치단체

□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방식	비중
사전정보	○ 사전정보공표 등록건수	정량/ 정성	100%
	○ 사전정보공표 충실성		

□ 평가 방식

- (사전정보공표 등록건수) 각 기관에서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에 등록한 사전정보공표 건수(조사일 기준)를 조사단이 추출하여 조사
 - ※ 목표건수 : 시도 540, 시군 640, 자치구 480 / 표준모델 적용 정보와 자체발굴 정보 모두 인정
 - ※ 목표건수 대비 100%이상 10점, 95%이상 9점, 90%이상 8점, 85%이상 7점, 80%이상 6점, 75%이상 5점 70%이상 4점, 65%이상 3점, 60%이상 2점, 55%이상 1점, 55%미만 0점
- (사전정보공표 충실성) 조사단이 기관 홈페이지에서 10건의 사전정보 공표 정보를 무작위로 검색하여 정보의 충실성 조사(조사일 기준)

▪ 판단 기준

구 분	내 용
게시판 설정여부(20%)	웹페이지 형태의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표목록마다 각각 게시판 (목록별 URL) 설정 여부 ※ 웹 페이지에 직접 게시하는 사례 지양
주기적 현행화(30%)	목록별 주기적 내용 현행화 여부
접근 및 검색 용이성(20%)	사전정보공표 용어 일원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사전정보공표, 메뉴 배치, 검색기능 제공, 즐겨찾기 정보 제공, 자료관리 체계성
정보내용의 충실성(30%)	국민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충실한 내용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

□ 지표 담당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고준석 사무관	02-2100-3451

7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한 청렴도 제고(8)

□ 평가대상 : 243개 지방자치단체

□ 측정항목(안)

측정영역	측정항목	방식	비중
외부청렴도	○ 부패위험지수(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정도) ○ 부패지수(부패 경험 및 부패 인식 정도)	조사	60%
내부청렴도	○ 청렴문화지수(업무처리의 투명성, 부정청탁 등 조직문화, 부패방지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 ○ 업무청렴지수(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		25%
정책고객 평가	○ 부패인식 ○ 부패통제 ○ 부패경험		15%
부패사건	○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 및 주의·훈계 등 처분에 대한 감점		(7%)
총 계			100%

※ '18년 측정항목 및 가중치 비중은 '18년 모형 검토 후 일부 변경 가능

□ 평가 방식

-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를 반영
- 측정영역별 진행 방식
 - (외부청렴도) 측정대상자는 CATI(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출되며, 전화조사 위주로 진행
 - (내부청렴도) 측정대상자를 본부·소속기관별, 직급별 구성비에 따라 우선할당 후 표본 추출하여 온라인(이메일, 모바일) 조사 진행
 - (정책고객) 측정대상자를 유형별로 할당한 후 표본 추출하여 전화 조사 및 온라인 조사로 진행

□ 지표 담당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	이진희 사무관	044-200-7632

8 공공서비스 목록 현행화(10-나)

□ 평가대상 : 243개 지방자치단체

□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방식	비중
공공서비스 목록 현행화	○ 등록 서비스 명칭, 자격 요건, 지원 내역 등 변경 사항을 월 1회(매월 말일) 정비(현행화)	정량	100%
기타	○ 해당 기관에서 서비스 중이나 목록 등록 누락한 경우 ○ 담당자 교육(상·하반기 각 1회) 불참한 경우	정량	감점

□ 평가 방식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4조의4에 따라 월 1회 이상 공공서비스 목록 정비, 단, 정비 대상이 없는 서비스의 경우 목록 조회 화면에서 일괄 현행화가 가능토록 시스템 개선 병행 추진
- (공공서비스 목록 현행화) 12개월 평균 현행화율로 평가(매월 말 기준, 공공서비스 목록 등록시스템(알려드림e) 자동 산출)
 - ※ 현행화율 = {(현행화한 목록 수) / (전체 등록 목록 수)} × 100
 - 100% 이상 100%(배점), 95% 이상 75%, 90% 이상 50%, 85% 이상 25%, 85% 미만 0%
- (기타) 행안부 자체 점검 및 민원인 신고 등을 통해 발견된 누락 목록을 합산하여 현행화 실적에서 감점
 - ※ 해당 건당 -0.1점 감점(배점의 5%)

□ 지표 담당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행정안전부 정부24운영팀	이선희 사무관	02-2100-4219